

장애인학대 지금 신고하세요!

신고전화
1644-8295



장애인을 때릴 때

장애인이 싫어하는데
억지로 몸을 만질 때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게 욕을 하거나
무서운 말을 하며 괴롭힐 때



장애인을 보호해야 하는
사람이 보호하지 않고
버렸을 때



장애인을 보호해야 하는
사람이 식사를 안 주거나,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을 때



돈을 빼앗거나,
일을 시키고
돈을 주지 않을 때

장애인학대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내용을 확인합니다.



조사를 합니다.



피해자를 도와줍니다.
의료·심리·거주·사법·복지



잘 지내는지
확인합니다.



언제
신고하나요?



장애인학대에 해당하는 일을 겪었을 때
장애인학대를 발견하였을 때

어떻게 신고하나요?

장애인학대신고전화
1644-8295로 전화합니다.

어떤 내용을
신고해야하나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합니다.

전국장애인권익옹호기관

기관명	주소
서울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서울 강남구 도곡로 416, 서울시립장애인행복플러스센터 2층(대치동)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부산 부산진구 서전로 25, 이오스플라자 301호(전포동)
대구장애인권익옹호기관	대구 동구 동부로22길 2, 서한코보스카운티 403호(신천동)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천 남구 경원대로 869, 르네상스빌딩 18층(주안동)
광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광주 서구 상무대로 719, 나라빌딩 2층(치평동)
대전장애인권익옹호기관	대전 동구 계족로 499, 루루빌딩 3층(용전동)
울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울산 남구 중앙로 311, 연세H타워 2층(신정동)
세종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세종 한누리대로 2143, 금강시티타워 604호(보람동)
경기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130, 누림센터 208호(오목천동)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 의정부시 오목로 225번길 140, 성산타워 301호(민락동)
강원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강원 춘천시 퇴계로 199, 경림빌딩 2층(석사동)
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1063번길 61-54, 라데팡스타워 303호(분평동)
충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상가2길9, 팰리스피아 110호(두정동)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석산2길 17-9, 4층(효자동3가)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남 목포시 영산로633, 세본에이치타워 2층(석현동)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길 4-5(대잠동)
경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85, 리제스타워 210호(중앙동)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제주 제주시 청귤로 5길 21, 1층(이도이동)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서울 금천구 벚꽃로 244, 1205호(가산동)

장애인학대 신고

언제

- 장애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
- 장애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 미등록장애인도 포함됩니다.

어떻게

- 전화 : 국번없이 1644-8295
- 방문 : 전국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온라인 및 팩스, 우편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인 보호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조치는 금지되며, 신고인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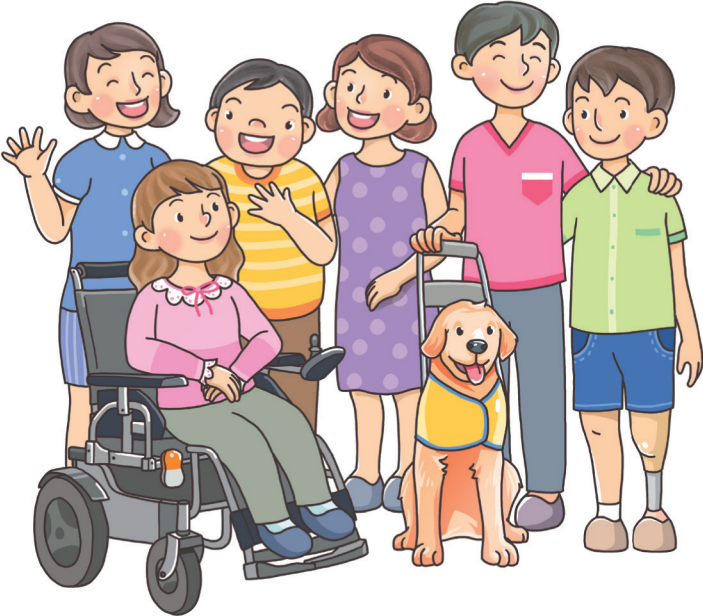
장애인학대 신고

1644-8295



장애인 학대 없는 사회

장애인의 평등하고 자유로운 삶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학대** 대응 전문기관입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장애인학대 신고**를 받고 피해장애인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합니다.

또한, **장애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의무자

장애인복지법상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 활동지원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장기요양기관 등의 종사자



의료인 등

의료인, 의료기사,
구급대원, 응급구조사



교육기관 종사자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유치원·학교의 교사·교직원, 학원 강사 등



상담소·보호시설의 종사자

성폭력·성매매피해, 가정폭력, 다문화,
한부모, 청소년 등 상담소·보호시설의 종사자

-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누구든 **장애인학대**를 알게 되면
신고하여야 합니다.

장애인학대유형

여러분의 신고로 장애인학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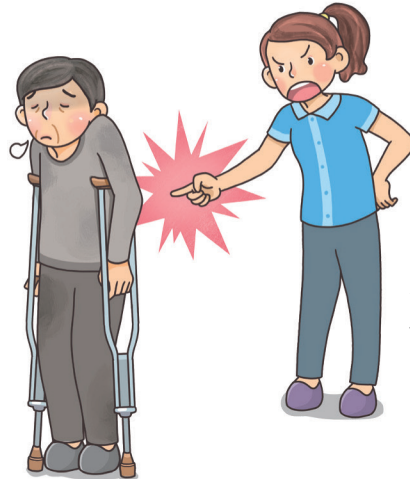
신체적 학대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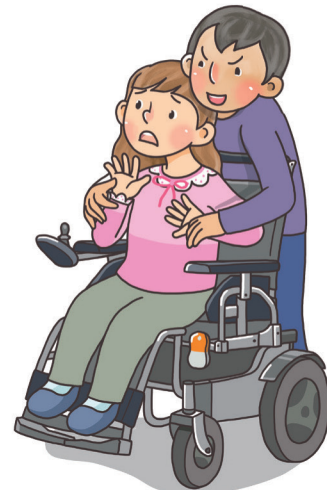
정서적 학대

언어적·비언어적 행동으로
참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경제적 착취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행위

재산을 빼앗거나 채무를 발생시켜
경제적 고통을 주는 행위



방임

보호·감독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기본적인 의식주 제공이나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유기

보호·감독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장애인을 버리는 행위



* 보호·감독의 의무가 있는 사람 : 친권자,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감독하는 사람

장애인학대 사례지원 절차



신고



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피해자
회복지원



사후모니터링



종결